

□복권종류별(즉석식) 판매현황

(단위 : 억원, %)

복권명	'98년			'97년			'96년		
	금액	점유율	순위	금액	점유율	순위	금액	점유율	순위
기업	138	23.1	1	224	19.0	1	265	17.2	3
체육	110	18.5	2	215	18.2	2	188	12.2	4
자치	85	14.3	3	196	16.6	3	353	22.9	1
기술	80	13.4	4	92	16.3	4	320	20.8	2
주택	76	12.7	5	127	10.8	6	154	10.0	6
복지	66	11.1	6	143	12.1	5	162	10.5	5
관광	41	6.9	7	84	7.1	7	99	6.4	7
계	596	100		1,081	100		1,541		

※연도별 판매기간은 1~9월 기준임.

4. 질의·답변 :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8명 전원일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98. 11. 30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개발사업 재원충당을 위하여 16개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95.7.1부터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나.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16개 시·도로 구성)

○액면금액 및 발행규모 : 2,500억원 (500원권, 1,000원권)

-500원권 추첨식 2억매, 500원권 즉석식 1억매, 1,000원권 전자식 1억매

○발행형태 및 발행회차 : 추첨식 24회, 즉석식 10회, 전자식 24회

○판매수익금 : 매출액의 28.8% 예상

○복권판매수익금 배분 : 기금 1,000억원 조성후 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 협의회에서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16개 시·도

라. 기타 : '99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별첨)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99발행계획

○발행기관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1특별시 6광역시 9도 공동발행)

○발행규모

-발행액 : 2,500억원 (500원권 3억매, 1,000원권 1억매)

-발행형태 및 발행회차 : 추첨식 24회, 즉석식 10회, 전자식 24회

· 500원권 추첨식 2억매, 500원권 즉석식 1억매, 1,000원권 전자식 1억매

○발행기간 : '99.1.1~12.31

○액면금액 : 500원, 1,000원

○발행매수 : 4억매

○판매지역 : 전국

○예산판매액 : 1,750억원(판매목표율 70%)

○수익금 예상액 : 504억원(판매액의 28.8%)

□복권판매수익금의 배분

○복권판매수익금 1,000억원 조성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 협의회에서 결정

1.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발행 근거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복권 발행 등)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1특별시, 6광역시, 9도 공동발행)

○발행규모 : 2,500억원(추첨식 500원권 2억매, 즉석식 500원권 1억매, 전자식 1,000원권 1억매)

○예상수익금 : 504억원(70% 판매시 판매액의 28.8%)

○발행기간 : '99.1.1~12.31

○판매지역 : 전 국

○복권금액의 구성비율(즉석식 100% 판매시)

복권액면가	당첨금지급	소매인 판매수수료	발행비 (제조, 광고비등)	수익금
500원 (100%)	258원 (51.5%)	50원 (10.0%)	50원 (10.0%)	142원 (28.5%)

2. 자치복권발행 및 판매실적('95~'98)

○복권발행 및 판매현황

구분	계	'95	'96	'97	'98 (9월말 현재)
발행액	204,500	60,000	82,000	46,000	16,500
판매액 (%)	115,262 (56.4)	39,390 (65.7)	46,572 (56.8)	20,797 (45.2)	8,503 (51.5)
서울지역판매액 (%)	52,648 (45.7)	18,849 (47.9)	26,331 (56.5)	5,528 (26.6)	1,940 (22.8)

○수익금 적립현황

구분	'95	'96	'97	'98 (10.16 현재)	합계
수익금	8,266	7,632	1,859	551	18,308
이자수익	—	1,030	923	2,714	4,667
계	8,266	8,662	2,782	3,265	22,975

※복권판매수익금의 배분(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정 제5조)

○기금 1,000억원 조성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 협의회에서 결정

3. 자치복권 지역별 판매현황(98.10.16.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역별	계		'98		'97		'96		'95	
		%		%		%		%		%
계	114,363	100	7,603	100	20,797	100	46,572	100	39,390	100
서울	52,649	46.0	1,940	25.5	5,528	26.6	26,331	56.5	18,849	47.9
부산	8,791	7.7	1,313	17.3	2,690	12.9	2,412	5.2	2,376	6.0
대구	4,257	3.7	498	6.5	1,354	6.5	1,258	2.7	1,147	2.9
인천	3,095	2.7	511	6.7	1,221	5.9	749	1.6	614	1.6
광주	2,553	2.2	230	3.0	646	3.1	878	1.9	799	2.0
대전	2,055	1.8	214	2.8	749	3.6	568	1.2	524	1.3
울산	218	0.2	218	2.9	—	—	—	—	—	—
경기	12,269	10.7	603	7.9	2,717	13.1	4,419	9.5	4,531	11.5
강원	3,860	3.4	499	6.6	784	3.8	1,200	2.6	1,377	3.5
충북	2,701	2.4	223	2.9	705	3.4	911	2.0	862	2.2
충남	3,671	3.2	304	4.0	353	4.1	1,189	2.6	1,325	3.4
전북	3,924	3.4	228	3.0	771	3.7	1,522	3.3	1,403	3.6
전남	4,422	3.9	257	3.4	394	4.3	1,678	3.6	1,593	4.0
경북	4,467	3.9	303	4.0	816	3.9	1,619	3.5	1,730	4.4
경남	4,706	4.1	250	3.3	1,028	4.9	1,663	3.6	1,765	4.5
제주	724	0.6	14	0.2	40	0.2	176	0.4	495	1.3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 12월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회 정기회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98년 12월 23일)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국제협력담당관 정순구)

제5회 서울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거주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대한 이해증진과 시민과의 친선도모 기회 마련을 위해 주한 외국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서울거주 외국인 중 각국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2명에 대하여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

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5. 검토보고(전문위원 윤 병 국)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먼저 제안사유에서 보듯이 제5회 서울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거주 외국인에 대해 시민과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 도모를 위한 시민증수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10.28)이 지난 지 2개월만에 의회의결을 받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안건제출로 보여짐.

○그리고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의회의결을 얻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정도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마지막으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12인 중 콩고의 Kitambo Mwabo K씨와 Janchivdorj Rombo씨가 주요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신분의 특